

#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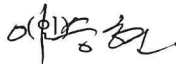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신흥학원(신한대학교)의 202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6년 5월 14일


학교법인 신흥학원

감사 한 상 숙 

감사 이 승 현 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명 법인사무국 부국장

성명 우 동 한 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학교법인 신흥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1. 법인일반업무회계 가.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</p> 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<p>-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액, 선급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액 등 교비회계 미전출</p>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장 변도윤 직인 (사인)

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신한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<p>1. 교비회계</p> <p>가. 타인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확보 (2필지)</p>          <p>2. 부속병원회계: 해당사항 없음</p>	<p>- 가등기 토지(농지, 동두천시 상패동 227-1, 227-3)의 등기 절차 진행 중</p>

피감사기관장

신한대학교

총장

강성종

직인 (사인)

